

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1. . .
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하여 조례안 제4조제1항에 공동세탁소 시설 이용료를 정확히 명시하여 이용료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4조제1항에 이용료 명시
 - 당 초 : 이용료 명시하지 않음
 - 변 경 : 이용료 명시
 - 하복 : 500원/1벌
 - 동복 : 1,000원/1벌

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이용료를”을 “다음과 같이 이용료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하복 : 500원/1벌
2. 동복 : 1,000원/1벌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이용료) 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<u>이용료를</u>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정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제4조(이용료) ① ----- ----- <u>다음과 같이 이용료를</u> ----- -----. <u>1. 하복 : 500원/1벌</u> <u>2. 동복 : 1,000원/1벌</u> ② (현행과 같음)

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명칭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(이하 “세탁소”라 한다)라 한다

제3조(사업) 시장은 구미시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세탁소 관리·운영 전반
2. 세탁물 수거, 세탁, 건조,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
3. 기본 작업복 수선

제4조(이용료) 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1. 하복 : 500원/1벌
2. 동복 : 1,000원/1벌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, 정원, 이용료 등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지원 등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② 수탁자는 세탁소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·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,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그 밖에 구미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양도 및 전대금지)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,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감독)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·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 등)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세탁소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및 위·수탁 협약서의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·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